

# 교육과정 운영 결과·계획 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선정 지침

제정 2025. 08. 21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교육과정 운영 규정」 제5조(교육과정 개발 및 환류) 및 제13조의2(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)에 따라,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운영 결과·계획 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환류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“교육과정 운영 결과·계획 보고서(이하 보고서)”란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차별 환류 중심 보고서를 말한다.

② “우수사례”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 내용의 완성도, 성과 분석의 깊이, 향후 계획의 실효성, 환류 기여도 등이 뛰어나, 다른 학과(전공)의 벤치마킹이 가능하거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.

**제3조(보고서 작성 시기 및 내용 범위)** ① 전공 보고서는 4년 주기 중 1~3년차에 작성하며, 이전연도 2학기 및 해당연도 1학기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, 차기 연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.

② 교양 보고서는 매학년도 종료 후 작성하며, 이전연도 1~2학기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, 차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.

③ 보고서는 우수사례 평가 및 확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.

**제4조(적용대상)**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적용한다.

1. 전공 교육과정: 4년 주기 중 1~3년차에 각 학과(전공)가 작성한 보고서
2. 교양 교육과정: 매 학년도 종료 후 FIND칼리지가 작성한 보고서

**제5조(보고서 주요 내용)**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1.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현황 분석
2. 전공 또는 교양 교육과정 로드맵
3. 전공능력 또는 FIND핵심역량 성취도 평가 결과

4. 강의평가 및 학생 만족도 분석
5.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우수사례
6. 교수학습 방법 적용 및 혁신 사례
7. 교육 수요자(산업체 및 졸업생 포함) 피드백 분석
8. 전년도 교육과정 개선계획 이행 실적 및 차기년도 운영 계획
9.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

**제6조(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선정 절차)** 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선정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르며, 세부 시행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.

1. 교육기획팀 : 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선정 계획(안) 수립 이후 교육혁신위원회 심의  
 ※ 교육과정 확정 일정 등 고려하여 학사지원팀과 일정 협의
2. 학사지원팀 : 각 학과(부)에 보고서 작성 요청
3. 보고서 제출 절차

[표 1]

| 연번 | 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학과(부) : 보고서 작성 완료 및 교과과정개발위원회 심의 후 소속 단과대학 제출 | FIND칼리지 : 보고서 작성 완료 및 교양교과위원회 심의 후 학사지원팀 제출 |
| 2  | 단과대학 : 전공교과위원회 심의 후 학사지원팀 제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4. 교육기획팀 : 보고서 취합 및 우수사례 후보 선별  
 ※ 학사지원팀에서 교육기획팀으로 보고서 전달
5. 교육기획팀 :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심의
6. 교육기획팀 : 우수사례 포상
7. 교육기획팀 : 우수사례 선정 결과 총장 보고 및 우수사례 확산
8. 교육기획팀 : 학과(전공)에 평가 사항 전달

**제7조(우수사례 선정기준)** 보고서 우수사례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보고서의 완성도
  - 가. 성과 분석의 객관성 및 심층성
  - 나. 수요자 피드백 반영의 적절성
  - 다. 개선안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
2. 환류 기여도
  - 가. 운영 성과가 차기 계획에 반영된 정도

- 나. 전공능력 달성에 기여한 성과
- 다. 학생 학습성과 향상 정도

3. 확산 가능성

- 가. 타 학과의 벤치마킹 가능성
- 나. 보고서의 구성, 표현력, 전달력
- 다. 혁신 사례의 구체성과 실효성

**제8조 (우수사례 선정 규모 및 포상)** ① 우수사례는 전체 제출 학과(부) 및 FIND칼리지 중 상위 20%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, 선정 규모 및 방식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 및 확산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 지급
2. 대학 홈페이지 및 내부 간행물에 우수사례 게재
3. 교원연수, 워크숍 등에서 사례 발표 기회 제공
4. 향후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활용

**제9조(보칙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
**부칙** (교육기획팀-287, 2025. 08. 21.)

이 지침은 2025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